

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박성훈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068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2. 26.

발 의 자 : 박성훈 · 김기웅 · 박충권
김승수 · 이현승 · 김형동
김성원 · 한지아 · 고동진
이상휘 · 안상훈 · 강명구
서명옥 · 박수영 · 김도읍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드론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드론의 활용 가능 영역이 물류 · 재난대응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음. 그러나 현행법은 드론 산업의 활용 기반 조성 및 육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, 드론 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비행 안전성 확보 방안 및 응급조치 등 사고 대응 체계에 관한 규정은 미비한 실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됨.

「항공안전법」에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초경량비행장치사고의 예방 및 운항 안전에 관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,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초경량비행장치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대하여 조종자 증명

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 드론 사고 관련 규정이 일부 도입되어 있으나, 드론산업의 발전으로 드론 운용 대수가 증가할수록 충돌·추락 등 안전사고의 위험성 또한 증가한다는 점에서 현행법에도 드론 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안전관리 체계를 포함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.

이에 드론 비행의 안전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안전성 확보 관련 사항을 포함하고, 드론 관련 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교육·훈련 실시 근거를 신설하며,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보완하여 드론산업 전반의 안전의식 제고 및 사고 대응책임을 강화하고자 함(안 제3조제1항 등).

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조성하기”를 “조성하고, 이를 위한 안전한 운용환경을 마련하기”로 한다.

제5조제2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의2. 드론사고 예방 및 비행 안전에 관한 사항

제9조의2제1항제1호 중 “등에”를 “및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이행 여부 등에”로 한다.

제16조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드론 관련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절한 대응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조(드론산업의 지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드론산업을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기업 간 상생문화를 구축하며 건전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행정적·재정적·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.	제3조(드론산업의 지원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조성하고, 이를 위한 안전한 운용환경을 마련하기</u> ----- -----.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5조(드론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) ① (생략)	제5조(드론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	② ----- -----.
1. ~ 6. (생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
<u><신설></u>	<u>6의2. 드론사고 예방 및 비행 안전에 관한 사항</u>
7. ~ 9. (생략)	7. ~ 9. (현행과 같음)
③ ~ ⑥ (생략)	③ ~ ⑥ (현행과 같음)
제9조의2(드론 정보체계의 구축·운영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전한 드론 활용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	제9조의2(드론 정보체계의 구축·운영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포함한 드론 정보체계(이하 “정보체계”라 한다)를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 1. 드론 관련 사고 현황·이력 등에 관한 정보 2. ~ 7. (생략) ②·③ (생략) 제16조(우수사업자의 지정 등) ① · ② (생략)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우수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 1.·2. (생략) <신설> ④ (생략)	----- ----- -----. 1. ----- <u>및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이행 여부 등에</u>----- 2. ~ 7. (현행과 같음) ②·③ (현행과 같음) 제16조(우수사업자의 지정 등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. 1.·2. (현행과 같음) 3. <u>드론 관련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절한 대응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</u> ④ (현행과 같음)
--	--